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6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 부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 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u>통보</u> <u>할 수 있다.</u>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 ----- ----- ----- ----- <u>통보</u> <u>하여야 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의 편성·집행

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의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 등 3종의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지침 통보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통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¹⁾하는 것임.

다만, 이러한 운영지침 통보는 재량사항에 불과하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운영지침의 통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 통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국가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① 조직운영과 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및 ③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²⁾ 등의 경영지침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1) ('25년말 기준 총 875개) 지방출자기관 101개, 지방출연기관 774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통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의무화하여 경영 효율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